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제조설비”란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3항에 따른 수소용품 중 수전해설비 및 수소추출설비를 말한다.
2. “수소저장설비”란 수소를 충전·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하는 저장탱크(수소의 품질을 균질화하기 위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수소가스설비”란 수소제조설비, 수소저장설비 및 연료전지와 이들 설비를 연결하는 배관 및 그 부속설비 중 수소가 통하는 부분을 말한다.

②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란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자동차, 설비 등에 고정된 용기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2.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3.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4.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
5.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6. 「선박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선박
7.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드론
8. 「항공안전법」 제2조에 따른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제7호에 따른 드론을 제외한다)

③ 법 제2조제8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용품”이란 연료전지(「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에 장착되는 연료전지는 제외한다), 수전해설비 및 수소추출설비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연료전지 :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하여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고정형(연료소비량이 232.6 킬로와트 이하인 것을 말한다) 및 이동형 설비와 그 부대설비
2. 수전해설비 : 물의 전기분해에 의하여 그 물로부터 수소를 제

조하는 설비

3. 수소추출설비 :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으로부터 수소를 제조하는 설비

④ 법 제2조제9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가동·건설 중인 발전소 내의 시설(연료전지의 앞부분에 설치된 가스차단밸브 이후의 시설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1. 연료전지를 고정 설치하고 타인으로부터 배관에 의하여 수소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연료전지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연료전지까지에 이르는 시설
2. 연료전지를 고정 설치하고 그 연료전지 사용자가 설치한 수소제조설비 또는 수소저장설비로부터 수소를 공급받아 수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소제조설비 또는 수소저장설비에서 연료전지까지에 이르는 시설
3. 제1호에 따른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배관으로 수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수소제조설비 또는 수소저장설비로부터 연료전지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까지 이르는 시설

제3조(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소경제 관련 경제·사회·기술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수소경제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방안에 관한 사항
3. 수소경제 분야 전문인력 양성방안에 관한 사항
4. 수소생산·저장·운송·활용에 관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수소경제 분야 국제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수소경제 이행 정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4조(수소전문기업의 확인 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소전문기업의 확인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소전문기업 확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소사업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
2. 수소사업 매출액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으로 한정한다)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 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 감사 대상 법인: 감사보고서

나. 가목 외의 자: 「상법」 제447조에 따른 재무제표

4. 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신청기업의 수소사업에 대한 설명자료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소전문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제1호는 제외한다)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3.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기업이 수소전문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소전문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수소전문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수소전문기업확인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소전문기업확인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수소전문기업 확인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수소전문기업 확인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그 원본

제5조(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제출대상)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법」 제10조제2호의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을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휴게시설 중 주차단위구획을 100개 이상 갖춘 휴게시설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3.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
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5.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갖춘 판매시설 중 주차단위구획을 200개 이상 갖춘 곳
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7.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로서 대지면적이 3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관광단지
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
1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11.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12.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호에 따른 공영터미널
1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영차고지
1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
16.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국가혁신융복합단지
17.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1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소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
사업소

19.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도시가스
충전사업자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고정
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소

2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석유판매사업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21. 그 밖에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
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지구 등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
하는 곳

제6조(수소 수급계획의 제출 등) ① 수소의 생산시설 또는 수소연료
공급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포함된 수소의 생산 및 수급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설비 증설 또는 폐지를 포함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수소생산시설의 생산능력 및 정비를 위한 가동중지 기간을 포
함한 향후 5년간의 운영계획
2.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충전용량
3. 수소생산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저장용량
4. 수소의 수급 방법 및 수급 지역

5. 그 밖에 수소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소의 생산 및 수급계획에 대한 검토를 법 제33조에 따라 지정받은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이하 “진흥전담기관”이라 한다),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받은 수소유통전담기관(이하 “유통전담기관”이라 한다), 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받은 수소안전전담기관(이하 “안전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대상)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시설운영자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 교육청
3.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4.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5.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6.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7.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8.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

제8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신청)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소특화단지 지정신청서에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수소특화단지 육성계획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 수소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가 정한다.

제10조(전문인력 양성의 내용)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소산업 관련 전문기술인력의 수급동향조사에 관한 사항
2. 수소전문기업의 수요에 연계된 교육과정 개설 및 취업연계사업에 관한 사항
3. 수소산업 관련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

의 확충에 관한 사항

4. 전문기술인력의 교류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수소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수소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위
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소산업 관련 통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함되어야 한다.

1. 수소의 수급 현황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수소산업의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수소연료공급시설의 현황에 관한 사항

4. 수소산업 관련 사업체의 경영 및 인력 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

5. 수소산업 관련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수소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수소산업 관련 통계의 작
성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2. 법 제33조에 따라 지정받은 진흥전담기관

3.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

제12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사업)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수소용품의 수출을 위한 이행보증 등 정책금융의 알선 및 관련 정보의 제공
2. 국제협력 전략의 수립
3. 수소산업 관련 국제기구 및 기관과의 협력
4. 외국 정부기관과의 협력회의 개최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소경제 육성을 위하여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촉진을 위하여 정하는 사업

제13조(기술연구개발 등)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발된 기술의 실증
2. 수소산업 관련 제품, 기술 및 서비스의 인증
3.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4. 수소사용 관련 기반시설의 관리기술 개발 및 활용

제14조(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범위·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종합정보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 제33조에 따라 지정받은 진흥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및 정부의 주요 정책
2. 법 제11조에 따른 수소전문기업 현황
3. 법 제28조에 따른 통계조사의 결과
4. 국내외 수소기술동향
5. 주요국의 수소정책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 사업) 법 제33조제2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수소산업 시장 및 수소생산·저장·운송·활용 관련 기술의 조사·분석과 수집정보의 이용
2. 수소산업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3. 기업의 수소산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발굴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수소생산·저장·운송·활용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사업

5.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지원·관리
6. 수소생산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의 구축·유지·보수 및 운영
에 관한 지원사업
7. 수소산업 관련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사업

제16조(진흥전담기관 지정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영 제40조 제3항에 따라 교부하여야 하는 진흥전담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진흥전담기관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정서 재교부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헐어 못 쓰게 되어 재교부받으려면 해당 진흥전담기
관 지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유통전담기관의 사업) ① 법 제34조제1항제6호에서 “산업통
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수소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업무
2. 수소생산·저장·운송·활용 관련 유통망의 조사·분석 및 수집정
보의 이용·제공
3. 수소량의 계량에 관한 업무
4. 수소유통비용의 적정화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소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운영능력 검토 등의 신청) 영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운영능력에 관한 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소유통전담기관 운영능력 검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소유통·거래·적정가격유지·수급관리 등의 운영계획서
2. 수소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점검·지도 관리계획서
3. 수소의 생산설비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운영정보의 수집·제공 계획서
4. 재정적 독립성 확보 계획서

제19조(유통전담기관 지정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영 제43조제2항에 따라 교부하여야 하는 유통전담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 제16조제2항에 따른 진흥전담기관 지정서 재교부에 관한 규정은 유통전담기관 지정서 재교부에 준용한다. 이 경우 “진흥전담기관”은 “유통전담기관”으로 본다.

제20조(수소안전전담기관의 사업)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수소생산·저장·수송·사용 관련 안전기술의 조사·분석과 수집정

보의 이용

2.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사고분석·조사 및 이에 필요한 지원

3. 수소안전 관련 표준화사업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4.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규제에 관한 연구·개발

5.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규제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발을 위한 기술 지원

6.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 안전규제 관련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7.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 관련 용역 사업

8. 그 밖에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제21조(안전전담기관 지정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영 제45조 제2항에 따라 교부하여야 하는 안전전담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제16조제2항에 따른 진흥전담기관 지정서 재교부에 관한 규정은 안전전담기관 지정서 재교부에 준용한다. 이 경우 “진흥전담기관”은 “안전전담기관”으로 본다.

제22조(수소용품 제조사업 등의 허가 및 등록 신청서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

지 제10호서식의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서식에 대하여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서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이나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재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외국수소용품 제조 등록(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등록 신청의 경우 종전에 등록한 사항 중 변경된 것이 없으면 제1호와 제2호의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3조(변경허가,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사항) ①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소의 이전

2. 수소용품 종류 또는 제조규격의 변경

②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의 변경

2. 법인 대표자의 변경

③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소의 이전

2. 수소용품 종류 또는 제조규격의 변경

④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

제24조(수소용품 제조사업의 변경허가·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신청

서 등) ①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

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②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신고 사항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소용품 제조사업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외국수소용품 제조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

④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신고 사항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대표자 변경

의 경우 해당 대표자가 법 제3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5조(허가증 등)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또는 재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외국수소용품 제조 등록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 및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내준 허가증이나 등록증명서의 뒷면에 변경허가,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발급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를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허가증의 재발급 신청 : 별지 제16호서식
2. 제2항에 따른 등록증명서의 재발급 신청 : 별지 제17호서식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의 재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26조(수소용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법 제36조제3항 및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수소용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7조(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의 면제 등) ① 영 제49조제2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소용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소용품을 말한다.

1.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수소용품
2.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수소용품(해당 수소용품을 직접 시험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수소용품
4. 주한(駐韓)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해당
외국의 검사를 받은 수소용품
5. 수소용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수소용

품

6. 그 밖에 법 제38조에 따른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이 곤란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수소용품

② 법 제38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③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외국의 제조 관련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이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외국의 기준을 말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장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외국수소용품 공장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설치계획서(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부분만을 말한다)

2.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부분만을 말한다)

3. 수소용품 제조공정도(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부분만을 말한다)

제28조(사업개시 등의 신고) 법 제39조에 따라 사업을 개시하거나 1개월 이상 중단·폐지 또는 재개하려는 자는 개시·중단·폐지

또는 재개 전에 별지 제19호서식의 개시·중단·폐지·재개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는 승계 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증

2. 계약서 사본, 상속·경매·환가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증명하는 서류 등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0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요령 등) 법 제4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요령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31조(안전관리규정의 심사) ① 법 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안전관리규정심사 신청서에 안전관리규정을 첨부

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규정의 심사기준과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안전관리규정의 이행 기록)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이행 기록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3조(안전관리규정의 준수 확인·평가)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의 확인·평가는 법 제4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 같이 실시한다. 다만,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경우에는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협의하여 실시시기를 정하되, 1년에 1회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평가를 할 때에는 외부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규정 준수의 확인·평가의 기준 및 그 밖에 확인·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 또는 퇴직의 신고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서에 따른다.

제35조(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변경공사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대상이 되는 변경공사로 한다.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완성검사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완성검사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36조(수소용품 검사신청서)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소용품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소용품 검사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수소용품검사의 전부 생략) ① 영 제52조제1항에 따라 수소용품에 대한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수소용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소용품 검사 생략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검사가 생략되는 수소용품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8조(수소용품검사의 일부 생략) 영 제52조제2항에 따라 수입하는 수소용품에 대한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수소용품의 성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을 경우
2.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수소용품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음이 증명되는 경우

제39조(수소용품의 합격표시)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수소용품에 대한 각인(刻印) 또는 표시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수소용품의 크기·형태 등으로 인하여 별표 3에 따르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에 따른 상세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제40조(수소용품의 검사기준 등)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수소용품 검사의 기준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41조(유통 중인 수소용품의 수집·검사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수집하여 검사를 할 수 있는 수소용품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합격일부터 1년(제조자가 품질보증기간을 설정한 것의 경우에는 그 품질보증기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다만, 수소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것도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수소용품에 대한 검사는 별표 1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술기준과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42조(수소용품의 회수·교환·환불 및 공표 명령)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회수·교환 및 환불(이하 “회수등”이라 한다) 명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명과 제조번호
2. 제조 또는 수입일자
3. 제조자 또는 수입자 명칭
4. 회수등의 사유
5. 회수등의 시기·장소 및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회수등의 대상이 되는 수소용품의 유통·판매를 중지시키거나 중지하고, 회수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회수등의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수등에 관한 광고를 2개 이상의 중앙일간지에 실어야 한다.

1. 수소용품의 회수등을 한다는 내용의 표제
2. 제품명과 제조번호
3. 회수등의 대상이 되는 수소용품의 제조연월 또는 수입연월
4. 회수등의 사유
5. 회수등의 방법
6. 회수등을 하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명칭
7. 그 밖에 회수등에 필요한 사항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표를 명하기 전에 공표 명령 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회수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3조(수소용품의 용도표시 등) 수소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수소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제조하였거나 수입한 수소용품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제조자·제조일자·용도·사용방법·보증기간 및 제조번호 등의 표시방법은 별표 1 제2호의 기술기준에 따른다.

제44조(안전교육) ① 법 제46조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교육기간·교육과정과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안전교육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수소연료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46조(수소연료사용시설의 완성검사)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변경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소제조설비, 수소저장설비 또는 연료전지의 변경공사(제조능력, 저장능력 또는 발전능력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관의 변경공사

가. 배관의 안지름 크기의 변경(이송능력이 변경되는 경우만을 말한다)

나. 배관 설치장소의 변경(변경하려는 부분의 배관의 총길이가 20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소연료사용시설 완성검사 신청서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사용
시작 7일 전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설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완공도면과
시공현황

2. 그 시설의 설치계획이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는지에 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
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설치계획서

2.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

⑤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중 수소연료를 사용하는 단독주택·공동주택 및 오
피스텔(주거용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수소연료사용시설을 설치하
여 사용하려는 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사
용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해당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하여 법 제4
7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서지역 중 교량으로 육지
와 연결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는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물에 대

한 사용승인신청 시 완성검사신청서 사본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법 제47조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
한 자에게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완성검사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
다.

제47조(수소연료사용시설의 정기검사) ① 법 제47조에 따른 정기검
사의 검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으
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소연료사용시설 정기검사 신청서
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정기검사일 1개월 전에 수소연료사용시
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려는 자에게 정기검사일·정기검사수수료
등 정기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알릴 수 있다.

④ 동일한 사업소에 2개 이상의 정기검사 대상시설이 있는 경우
로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정기검사기간에 다른 시설
의 정기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⑤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법 제47조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
한 자에게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정기검사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
다.

제48조(상세기준 제정·개정 절차)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이하 “기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세기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

2.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사유와 그 근거자료

② 기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기준위원회 회의에 부치는지를 검토하여 회의에 부치기로 하였을 때에는 그 안건을 회의에 부치고, 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기준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안건을 회의에 부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상세기준의 명칭, 번호(개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주요 내용, 사유 및 의견 제출기간 등을 기준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한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그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세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준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9조(수소용품제조허가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50조(수소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① 영 제55조제1항에 따른 수소판매가격의 보고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수소판매가격 보고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세부적인 작성 요령 등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1조(보험가입 등) ① 영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는 법 제51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과실로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한 손해액으로 한다.

② 영 제56조제1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목적으로 수소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 가.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것(해당 수소용품을 직접 시험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것
 - 다. 주한(駐韓)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외국의 검사를 받은 것
 - 라. 수소용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것

마.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

2. 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자

③ 영 제56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액은 별표 7과 같다.

제52조(수수료 등)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8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1조의 규정은 202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1] 수소용품 및 외국수소용품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
(제26조, 제27조제3항, 제35조제3항, 제39조, 제40조, 제
41제2항 및 제43조 관련)

[별표 2]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요령(제30조 관련)

[별표 3] 수소용품의 합격표시(제39조 관련)

[별표 4] 안전교육 실시방법(제44조제1항 관련)

[별표 5]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제45조, 제46조제
2항 및 제47조제1항 관련)

[별표 6] 행정처분기준(제49조 관련)

[별표 7]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제51조제3항 관련)

[별표 8] 허가 등의 수수료(제52조제1항 관련)

[별지 서식]

[별지 제1호서식] 수소전문기업 확인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수소전문기업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 수소전문기업확인서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수소특화단지 지정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지정서

[별지 제6호서식]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수소유통전담기관/수소안

전전담기관 지정서 재교부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수소유통전담기관 운영능력 검토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수소유통전담기관 지정서

[별지 제9호서식] 수소안전전담기관 지정서

[별지 제10호서식]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외국수소용품 제조 등록/변경등록/재등록 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수소용품 제조사업 변경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서

[별지 제14호서식]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증

[별지 제15호서식] 외국수소용품 제조 등록증명서

[별지 제16호서식]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외국수소용품 제조 등록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외국수소용품 공장심사 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수소용품 제조사업 개시/중단/폐지/재개 신고서

[별지 제20호서식]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별지 제21호서식] 안전관리규정심사 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퇴직 신고서

[별지 제23호서식] 수소용품 제조시설 완성검사/수소연료 사용시설
정기검사 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완성검사/정기검사 검사증명서

[별지 제25호서식] 수소용품 검사 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 수소용품 검사 생략 신청서

[별지 제27호서식] 안전교육 신청서

[별지 제28호서식] 기술검토신청서

[별지 제29호서식] 판매가격 보고서

수소용품 및 외국수소용품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

(제26조, 제27조제3항, 제35조제3항, 제39조, 제40조, 제41제2항 및 제43조 관련)

1. 시설기준

- 가. 수소용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제2호의 기술기준에 따라 수소용품을 제조하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제조설비를 갖추어 갖출 것. 다만, 허가관청이 부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부품을 제조하는 전문생산업체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전문생산업체가 제조한 부품을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허가관청은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 나. 수소용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제품의 성능을 확인·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기준에 맞는 검사설비를 갖추어 갖출 것. 다만, 설계단계검사항목의 검사설비 중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해당 공인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시험·검사를 하는 경우 또는 검사설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검사설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 1)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자체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설비
 - 2) 해당 사업소의 제품생산능력에 맞는 처리능력을 가진 검사설비

2. 기술기준

- 가. 수소용품의 재료는 그 수소용품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하는 온도 및 환경에 적절한 것일 것
- 나. 수소용품의 구조 및 치수는 그 수소용품의 안전성·편리성 및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수소용품의 재료 및 사용하는 환경에 적절한 것일 것
- 다. 수소용품의 성능은 그 수소용품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수소용품의 재료 및 사용하는 환경에 적절한 성능을 갖춘 것일 것
- 라. 수소용품에는 그 수소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 수소용품제조자, 그 수소용품 및 사용하는 수소용품에 관한 정보 등에 대하여 적절한 표시를 할 것
- 마. 수소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하는 환경에 적절한 취급설명서를 첨부할 것
- 바. 수소용품에는 그 용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하는 환경에 적절한 안전수칙을 표시할 것
- 사. 수소용품에는 그 용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관표시와 시공표지판을 부착할 것
- 아. 열처리가 필요한 재료로 제조한 수소용품의 경우 그 열처리는 안전을 위하여 그 수소용품의 재료와 두께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 자. 수소용품에는 그 수소용품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수소용품의 종류와 사용하는 환경에 적절한 장치를 갖춘 것일 것

3. 검사기준

- 가. 제조시설 검사기준
- 수소용품 제조시설에 대한 검사는 제1호의 시설기준에 따라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를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것
- 나. 제품 검사기준

수소용품에 대한 검사는 제2호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계단계검사와 생산단계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것

1) 설계단계검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단계검사를 받을 것. 다만, 부품의 성능을 한국가스안전공사나 공인시험·검사기관이 인증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부품에 대한 설계단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 가) 수소용품 제조사업자가 그 업소에서 일정 형식의 제품을 처음 제조할 경우
- 나) 수소용품 수입업자가 일정형식의 제품을 처음 수입하는 경우
- 다)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형식의 제품의 재료나 구조가 변경되어 성능이 변경된 경우
- 라)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형식의 제품으로서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5년이 지난 경우

2) 생산단계검사

- 가) 설계단계검사에 합격된 수소용품에 대하여 그 수소용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실시할 것
- 나) 자체검사능력과 품질관리능력에 따라 구분된 다음 표의 검사 종류 중 수소용품 제조자나 수소용품 수입자가 선택한 어느 하나의 검사를 실시할 것

검사 종류	대상	구성 항목	주기
(1) 제품확인검사	생산공정검사	(가) 정기품질검사	2개월에 1회
	또는 종합공정검사 대상외의 품목	(나) 상시샘플검사	신청 시마다
(2) 생산공정검사	제조공정·자체검사	(가) 정기품질검사	3개월에 1회
	공정에 대한 품질	(나) 공정확인심사	3개월에 1회
	시스템의 적합성을 충족할 수 있는 품목	(다) 수시품질검사	1년에 2회 이상
(3) 종합공정검사	공정전체(설계· 제조·자체검사)에 대한 품질시스템의 적합성을 충족할 수 있는 품목	(가) 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	6개월에 1회
		(나) 수시품질검사	1년에 1회 이상

- 다) 수소용품이 안전하게 제조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제2호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 라) 생산공정검사와 종합공정검사 대상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심사기준은 전문성·객관성 및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것
- 마) 생산공정검사나 종합공정검사를 받고 있는 자가 검사대상 품목의 생산을 6개월 이상 휴지하거나 검사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고 합격통지서를 반납할 것

바) 생산공정검사나 종합공정검사를 받고 있는 자가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산공정검사나 종합공정검사를 다시 받을 것

(1) 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2) 품목을 추가한 경우

(3) 생산공정검사나 종합공정검사 대상 심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다만, 수소용품의 해당 품목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품목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4. 그 밖의 사항

가. 기술개발에 따른 새로운 수소용품의 제조 및 검사 방법이 이 별표에 따른 시설·기술 및 검사 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안전관리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소용품의 제조 및 검사 방법을 그 수소용품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 제26조제3항 단서에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이란 이 별표에 따른 시설·기술·검사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준을 말한다.

다.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7조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한 기준에서 정한 국가별 공인검사기관을 말한다.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요령(제30조 관련)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수소용품 제조사업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목적
 - 나. 안전관리자의 직무·조직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다. 종업원의 교육과 훈련에 관한 사항
 - 라. 위해 발생 시의 소집방법·조치·훈련에 관한 사항
 - 마. 검사장비에 관한 사항 바. 수소용품의 공정검사·검사표 등에 관한 사항
 - 바. 수소용품의 공정검사·검사표 등에 관한 사항
 - 사. 외부인과 외부 하청업자 등의 안전관리규정 적용에 관한 사항
 - 아. 안전관리규정 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 자. 그 밖에 안전관리 유지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항목별 세부 작성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수소용품의 합격표시(제39조 관련)

검사에 합격된 수소용품에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이하 "KC마크"라 한다)를 다음 기준에 따라 각인(刻印)하거나 검사증명서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소용품이 일관공정으로 제조되는 경우에는 제조공정 중에 그 합격표시를 하게 할 수 있다.

1. KC마크 각인방법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높이: 200A 미만인 경우에는 5mm, 200A 이상인 경우에는 10mm
---	---

2. 검사증명서 표시 방법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검사증명서의 크기는 30mm×30mm로 하고 바탕색은 은백색, 문자색은 검은색으로 한다. 다만, 복수인증제품으로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4에 따라 별도로 고시하는 경우에는 KC마크의 높이와 색상을 변경할 수 있다.
--	---

안전교육 실시방법(제44조제1항 관련)

1. 교육계획의 수립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전문교육 실시계획을 세워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교육신청

- 가. 전문교육의 대상자가 된 자는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수강신청을 하지 못한 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 나. 양성교육을 이수하려는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매년 초에 지정하는 기간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3. 교육일시의 통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2호에 따른 교육신청이 있으면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장소와 교육일시를 알려야 한다.

4. 교육의 과정, 대상자 및 시기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시기
가. 전문교육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원	신규종사 후 6개월 이내 및 그 후에는 3년이 되는 해마다 1회
나. 양성교육	일반시설 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자	

비고

1. 교육대상자별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그 밖에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한다.
2. 가목의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원교육을 받은 사람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1 제4호가목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9 제4호 가목 2)·6) 및 나목2)·3)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4호가목3)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나목의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가목의 전문교육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다.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제45조, 제46조제2항 및 제47조제1항 관련)

1. 시설기준

가. 배치기준

- 1) 수소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보호시설까지 안전확보에 필요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방호벽(「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2호에 따른 방호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 2) 수소가스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화기(그 설비 안의 것은 제외한다)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8m의 우회거리를 두어야 하며, 그 설비로부터 누출된 수소가 유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것
- 3) 산소의 저장설비 주위 5m이내에는 화기를 취급해서는 안되며, 작업에 필요한 양 이상의 연소하기 쉬운 물질을 두지 않을 것
- 4) 가스계량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 가) 가스계량기는 교체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환기가 양호한 장소에 설치할 것
 - 나) 가스계량기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대피공간, 방·거실 및 주방 등으로서 사람이 거처하는 장소, 그 밖에 열이나 진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 등 가스계량기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설치하지 않을 것
 - 다)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60cm 이상, 굴뚝(단열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만을 말한다)·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30cm 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의 거리는 15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 5) 입상관은 환기가 양호한 장소에 설치하고, 입상관의 밸브는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m 이내(보호 상자 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설치할 것

나. 기초기준

수소제조설비(압축기는 제외한다) 및 수소저장설비 기초는 부등침하 등에 의하여 그 설비에 유해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도록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다. 수소제조설비 및 수소저장설비 설치설 기준

수소제조설비 및 수소저장설비를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그 실의 벽은 그 설비의 보호와 그 설비를 사용하는 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불연재료(不燃材料)를 사용하고, 그 설치설의 지붕은 가벼운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를 사용할 것

라. 수소가스설비기준

- 1) 수소가스설비(배관은 제외한다. 이하 라목에서 같다)의 재료는 그 수소를 취급하기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일 것
- 2) 수소가스설비의 구조는 그 수소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 3) 수소가스설비의 강도 및 두께는 그 수소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 4) 수소가스설비는 그 수소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할 것
- 5) 수소연료사용시설에는 압력조정기·가스계량기·중간밸브 등 필요한 설비 및 장치를 설치하고, 그 시설의 안전 확보 및 정상작동을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마. 배관설비기준

- 1) 배관의 재료는 그 수소의 수송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일 것
- 2) 배관의 구조는 수소를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 3) 배관의 강도 및 두께는 그 수소를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 4) 배관의 접합은 수소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확실한 방법으로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파괴시험을 할 것
- 5) 배관은 신축 등으로 수소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6) 배관은 수송하는 수소의 특성 및 설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위해의 염려가 없도록 설치하고, 배관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7) 배관은 수소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압성능과 기밀성능을 가지도록 할 것
- 8) 배관의 안전을 위하여 배관의 외부에는 수소를 사용하는 배관임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칠하고 표시할 것

바. 연소기 기준

연료전지는 화재 및 폭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 확보와 정상작동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사. 사고예방설비기준

- 1) 수소가스설비에는 그 설비 안의 압력이 최고허용사용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그 압력을 최고허용사용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2) 수소저장설비에는 필요에 따라 수소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3) 배관에는 긴급 시 수소의 누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 4) 수소연료사용시설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그 설치장소에 따라 적절한 방폭성능을 가진 것일 것
- 5) 수소가스설비를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누출된 수소가 체류하지 아니하도록 환기구를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6) 수소저장설비 또는 배관에는 그 저장설비 또는 배관이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7) 수소연료사용시설에는 그 설비에서 발생한 정전기가 점화원으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8) 연료전지, 수전해설비 및 수소추출설비에는 손상, 누출, 폭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아. 피해저감설비기준

- 1) 수소의 저장능력(「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저장능력을 말한다)이 60 m³ 이상인 수소저장설비를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그 실의 벽은 방호벽으로 할 것
- 2) 수소저장설비 또는 배관에는 그 저장설비 또는 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온도상승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자. 표시기준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수소를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경계표지, 식별표지 및 위험표지 등 적절한 표지를 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계책을 설치할 것

차. 그 밖의 기준

- 1) 수소연료사용시설에 설치 또는 사용하는 설비가 다른 법령에 따른 검사대상인 경우에는 그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 2) 수소연료사용시설에 설치 또는 사용하는 수소용품은 법 제44조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2. 기술기준

가. 안전유지기준

수소연료사용시설은 가스의 누출, 화재 및 폭발이 예방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것

나. 점검기준

- 1) 수소연료사용시설은 사용개시 및 사용종료 시에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외에 1일 1회 이상 수소연료사용시설의 구조에 따라 수시로 소비설비의 작동상황을 점검해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수한 후 사용할 것
- 2) 수소가 통하는 설비를 수리·청소 및 철거할 때에는 그 작업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작업 후에는 그 설비의 성능유지와 작동성 확인 등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3. 검사기준

가.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검사항목은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검사종류	검사항목
1) 완성검사	제1호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2) 정기검사	① 제1호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해당사항 ② 제2호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 [나목은 제외한다] 중 해당사항

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것

행정처분기준(제4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같으면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사업정지 또는 제한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최초의 행정처분일부터 같은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행정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수소용품 제조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라. 행정처분권자는 다목에 따라 처분을 감경할 때에는 다음에 따른다.

- 1) 사업정지 또는 제한의 경우: 그 처분일 수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
- 2) 허가취소의 경우: 6개월의 사업정지 또는 제한

마. 행정처분권자는 행정처분 전에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권고 기간에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않으면 제2호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바. 행정처분권자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지기간 중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1호	허가취소			
2) 허가를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2호	허가취소			

3) 고의나 과실로 공중(公衆) 또는 사용자에게 현저히 위해(危害)를 끼친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3호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90일	허가취소
4) 법 제36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4호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허가취소
5)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허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5호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	허가취소
6)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6호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허가취소
7) 법 제3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7호	허가취소			
8)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8호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허가취소
9) 법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의 해임 및 퇴직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9호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허가취소
10)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에 합격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10호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허가취소
11)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위반 행위를 한 경우 나) 경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11호	사업정지 또는 제한 9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18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	허가취소
12) 법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수명령 또는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12호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허가취소
13) 법 제45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조한 수소용품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13호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180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제51조제3항 관련)

1.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보험금액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제1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사망과 부상의 경우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금액

나.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금액

보험금액	적용 범위
1억원 이상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을 한 자

2. 보험료의 할인 기준

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할인하여야 한다.

- 1)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사업자등의 안전관리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이하 "안전관리 종합평가"라 한다)하여 안전관리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등
- 2)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사업자등의 안전관리 운영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선정되어 인증마크를 취득한 사업자등

나. 가목1)에 따른 안전관리종합평가결과 등급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한다. 다만, 가목2)에 따라 인증마크를 취득한 사업자는 A등급을 우선 적용한다.

등급	할인율
A	40%
B	30%
C	20%
D	10%

비고

위 표에서 A, B, C 및 D는 각각 다음의 경우를 나타낸다.

A: 평가결과가 평가대상의 상위 10% 이내

B: 평가결과가 평가대상의 상위 10% 초과 20% 이내

C: 평가결과가 평가대상의 상위 20% 초과 30% 이내

D: 평가결과가 평가대상의 상위 30% 초과 40% 이내

다. 안전관리종합평가의 절차,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소비자단체, 허가관청, 보험개발원 및 가스공급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한다.

허가 등의 수수료(제52조제1항 관련)

대 상	금 액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	2만 5천원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재등록	2만 5천원
변경허가	1만 5천원
변경등록	1만 5천원
허가증 재발급	1만 5천원
등록증 재발급	1만 5천원

수소전문기업 확인 신청서

(앞쪽)

기업명		설립일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종		주생산품	
자산총계	백만원	연구개발비	백만원
영업이익	백만원	당기순이익	백만원
기업규모		분야	
종업원수	총원()명 석·박사 (명) 학사이하 (명)		
실무책임자	성명		소속
	직위		전자우편
	전화		팩스
	핸드폰		회사 홈페이지
소재지			

[수소사업 매출액 명세] (단위: 백만원)

매출발생 기준 연도(전년도)					
수소제품·수소용품				수소제품·수소용품 매출액	
연번	제품명	표준산업 분류코드	HS 코드	국내매출액	수출액
1					
2					
3					
⋮					
				국내매출액 총계	수출액 총계
수소용품의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총계(A)					
기업의 총 매출액(B)					
총매출액 중 수소제품·수소용품 매출액 비율(A/B)				%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 명세] (단위: 백만원)

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 총계(A)	
기업의 총 매출액(B)	
총매출액 중 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 비율(A/B)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소전문기업 확인을 신청합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수소전문기업 관리를 위해 제출한 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신청안내		
첨부서류	1. 수소사업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 2. 수소사업 매출액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으로 한정한다)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 감사 대상 법인: 감사보고서 나. 가목 외의 자: 「상법」 제447조에 따른 재무제표 4. 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신청기업의 수소사업에 대한 설명자료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소전문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동의서에 서명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제 호

수소전문기업확인서

기 업 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소 재 지 :

유효기간 : . . ~ . .

위 기업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수소전문기업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수소전문기업확인서 재발급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는 곳입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자	성명	직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수소전문기업확인서 번호					
					(유효기간: ~)

변경 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기업명		
대표자		
주 소		
그 밖의 사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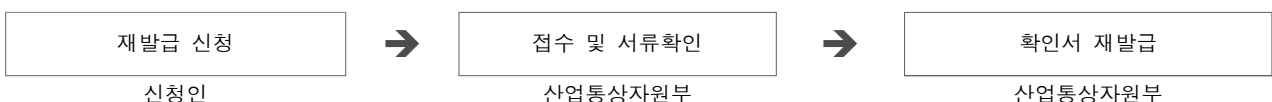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중

첨부서류	1. 수소전문기업확인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수소전문기업확인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그 원본 (원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발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체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수소특화단지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는 곳이 아닙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1일		
신 청 시·도지사	시 · 도 명 칭			시 · 도지사				
	주 소(시 · 도청사)							
	전 화(담당자)			E-Mail(담당자)				
신청내용	수소특화단지의 명칭							
	지정목적 및 필요성							
	위 치							
	소속 단지명							
	신청단지면적		m ²		산업단지면적		m ²	
	주요 입주업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수소특화단지 육성계획서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요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

수소경제위원회
심의

➡

지정 고시

신청인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제 호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지정서

기 관 명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 소

설 립 근 거

설 립 목 적

설립 연월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 기관을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수소유통전담기관 운영능력 검토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는 곳이 아닙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기관명		
	성명(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e-mail)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수소유통전담기관의 지정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운영능력 검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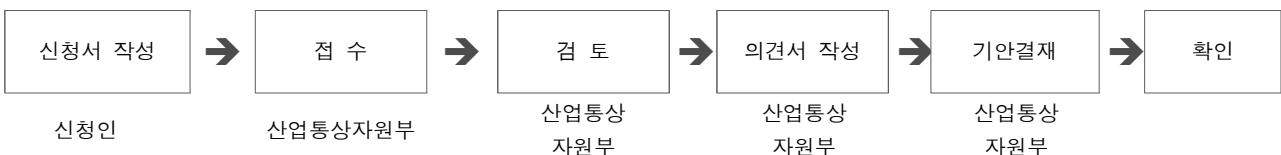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수소유통·거래·적정가격유지·수급관리 등의 운영계획서 2. 수소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점검·지도 관리계획서 3. 수소의 생산설비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운영정보의 수집·제공 계획서 4. 재정적 독립성 확보 계획서	수수료 없 음
------	---	------------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 80g/㎡)

제 호

수소유통전담기관 지정서

기 관 명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 소

설 립 근 거

설 립 목 적

설립 연월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 기관을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제 호

수소안전전담기관 지정서

기 관 명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 소

설 립 근 거

설 립 목 적

설립 연월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 기관을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수소용품 제조사업 [] 허가 [] 변경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소 소재지	

수소용품의 종류 및 규격

※ 변경내용은 변경허가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변경내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소의 이전		
	수소용품의 종류 또는 제조규격		
변경사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본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및 제24조 제1항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변경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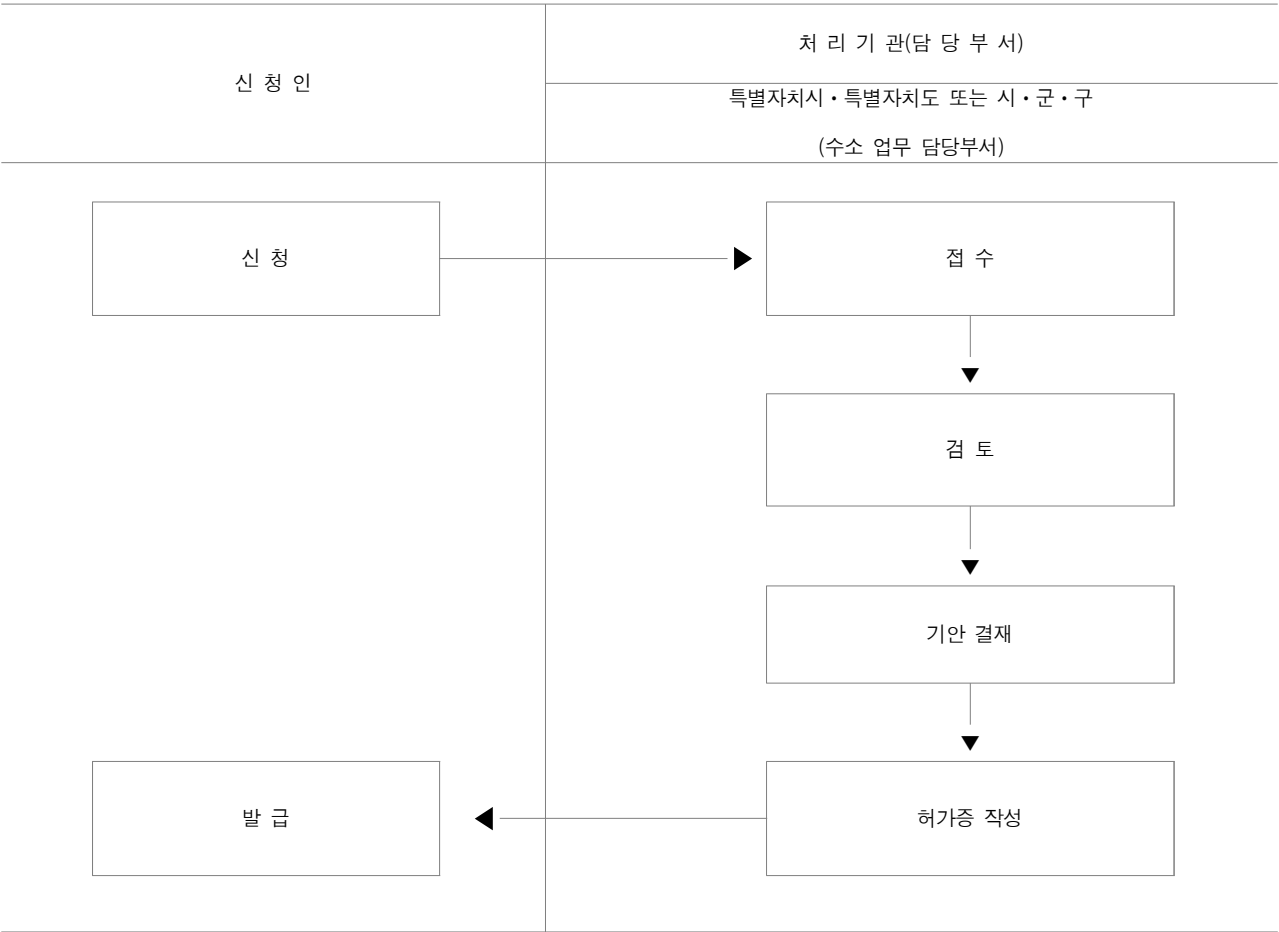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허가 시 1. 사업계획서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수수료 허가: 2만5천원 변경허가: 1만5천원
	변경허가 시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허가 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외국수소용품 제조 [] 등록(Registration)
Foreign Hydrogen [] 변경등록(Alteration) **신청서**
Appliance [] 재등록(Re-Registration) **Application Form**
Manufacture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The dark colored field is not applicable for an applicant. / Check "√" in applicable bracket.

(앞쪽)

접수번호 Receipt No.	접수일 Receipt Date	처리기간 Process Term	5일 5 Days
---------------------	---------------------	----------------------	--------------

신청인 Applicant	상호 (Company Name)		
	대표자 (Name of CEO)		
	사무소 소재지 (Office Address)	전화번호 (Phone No.)	
	사업소 소재지 (Business Address)		

※ 변경내용은 변경등록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Altered Contents for only alteration registration.)

변경내용 Altered Contents	구 분(section)	변경 전(Before Change)	변경 후(After Change)
	사업소 위치 (Business Location)		
	수소용품의 종류 (Type of Hydrogen Appliances)		
	수소용품의 제조규격 (Manufacturing Standards)		

변경사유 Reason	
----------------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본문, 동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라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변경등록·재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to undergo the manufacture [alteration, re-] regis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38(1)·(2) of the Economic Promotion and Safety Control of Hydrogen Act, the Article 22(2) and the Article 24(3)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ame Act.

년 월 일

(Year) (Month) (Date)

신청인(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to: Minister of Trade, Industry & Energy

첨부서류 Required Document	등록 시(Initial Registration)	수수료 (Handling Fee)
	1. 사업계획서 1부 (1 copy of a business project plan)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1 copy of technical review)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 1부 (1 copy of factory audit results)	
	변경등록 시 (Alteration Registration) 1. 사업계획서 1부 (1 copy of a business project plan)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1 copy of technical review)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 1부 (1 copy of factory audit results) ※ 등록시의 내용과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The copy of business project plan can be omitted if there is no modification compared to the initial registration.)	
	재등록 시(Re-Registration) 1. 사업계획서 1부 (1 copy of a business project plan)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1 copy of technical review)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 1부 (1 copy of factory audit results) ※ 등록 시의 내용과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The copy of business project plan and technical review can be omitted if there is no modification compared to the initial registration.)	

등록 및 재등록: 2만5천원

변경등록: 1만5천원

Initial and Re-Regist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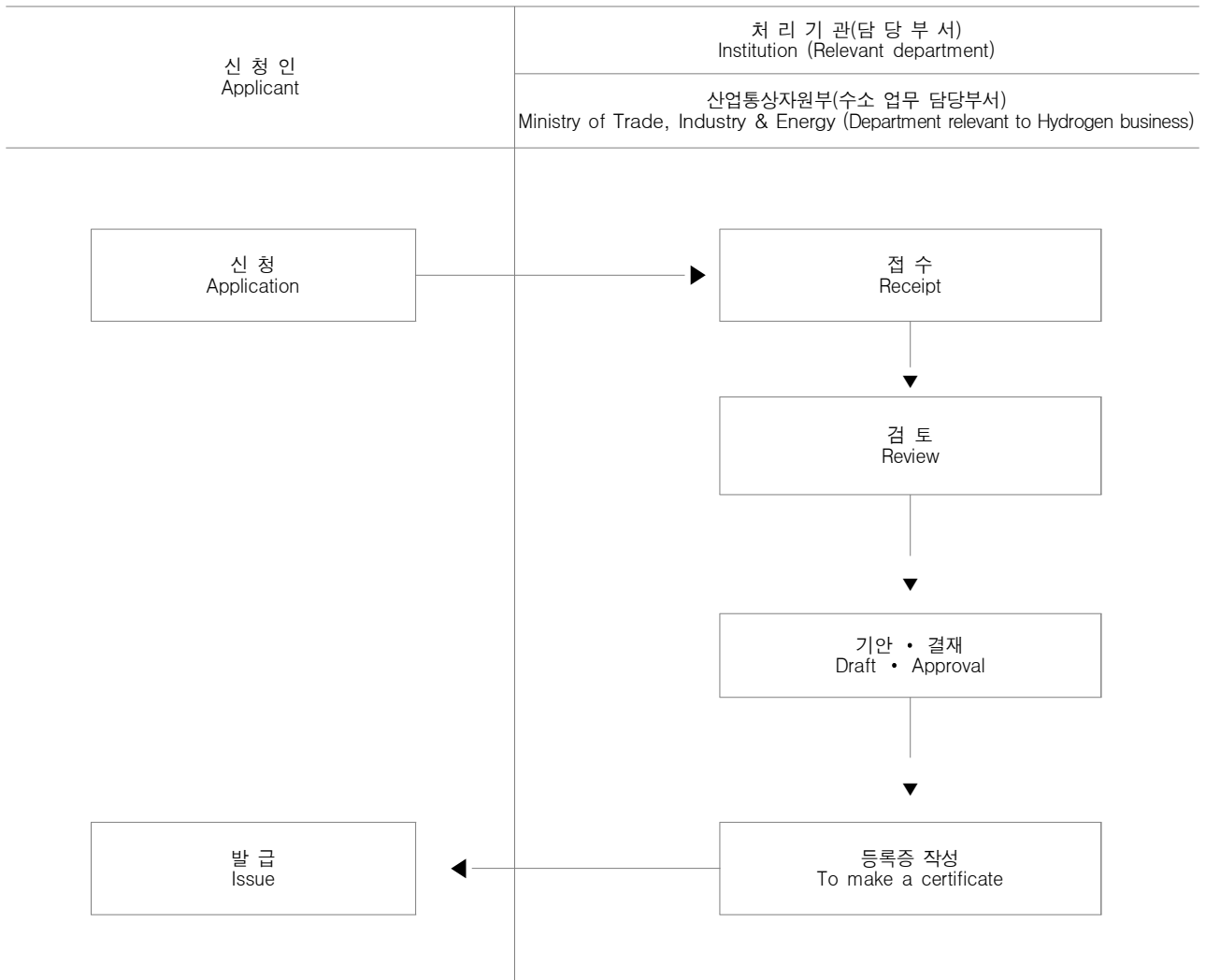
25,000 won

Alteration: 15,000 won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처리절차(Handling Process)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This application form will proceed as follows.)



수소용품 제조사업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소 소재지				
변경 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상호의 변경				
	법인 대표자의 변경				
변경 사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변경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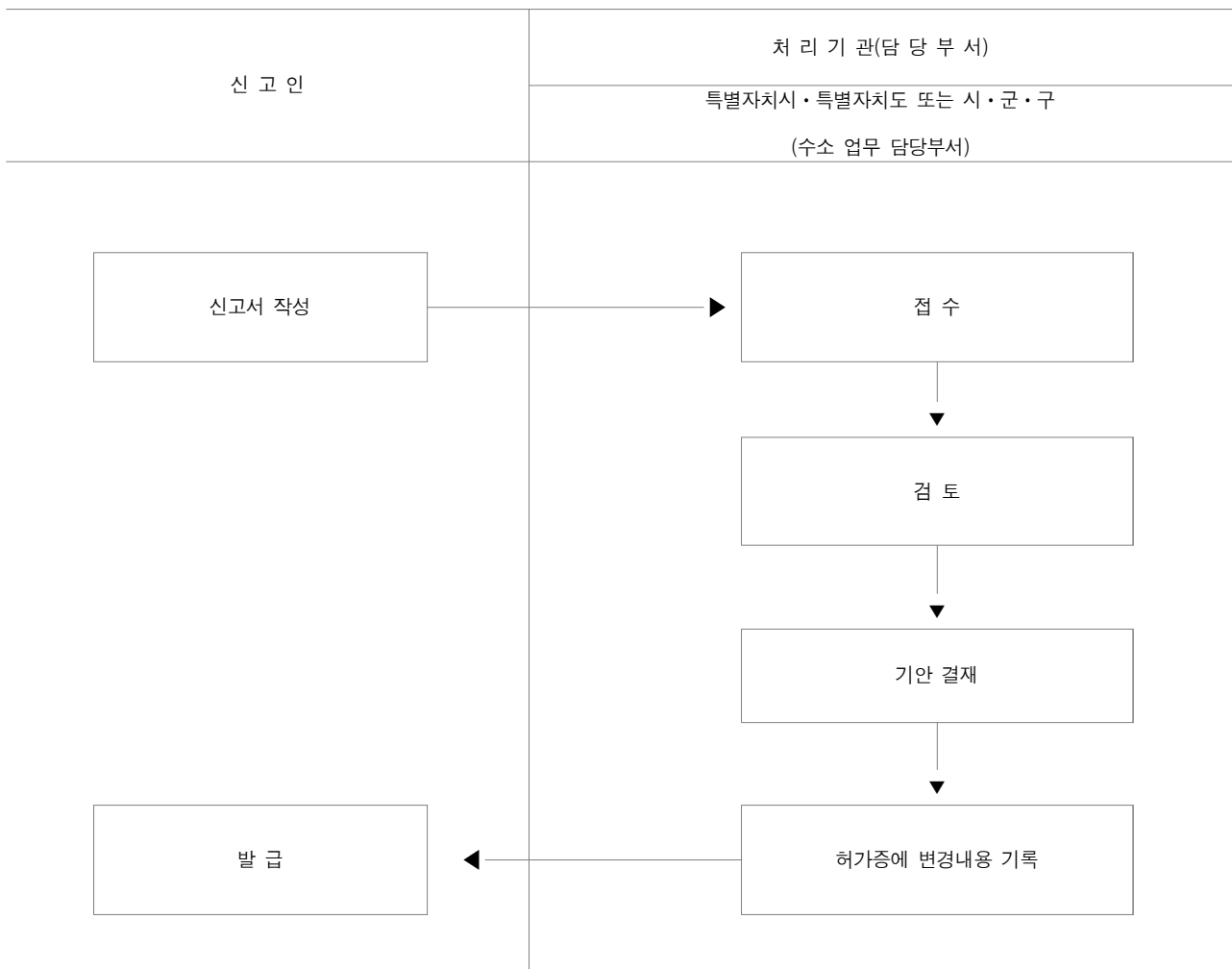
첨부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대표자 변경의 경우 변경되는 대표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서

Foreign Hydrogen Appliance Manufacture Registration Alteration Declaration Form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The dark colored field is not applicable for an applicant.)

접수번호 Receipt No.	접수일 Receipt Date	처리기간 Process Term	3일 3 Days
신고인 Applicant	상호 (Company Name)		
	대표자 (Name of CEO)		
	사무소 소재지 (Office Address)	전화번호 (Phone No.)	
	사업소 소재지 (Business Address)		
변경 내용 Altered Contents	구분(section)	변경 전(Before Change)	변경 후(After Change)
	상호의 변경 (Company Name)		
	대표자 변경 (Name of CEO)		
변경 사유 Reason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의 변경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I hereby apply to undergo the alteration of regis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38(1) of the Economic Promotion and Safety Control of Hydrogen Act and the Article 24(4)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ame Act.

년 월 일
(Year) (Month) (Date)

신고인(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to: Minister of Trade, Industry & Energy

첨부서류 Required Document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copy of an evidentiary document for alterations)	수수료 없음 (No Handling Fee)
처 리 절 차 (Handling Process)		
신고서 작성 Application 신고인 Applicant	→ 접수 Receipt	→ 검토 Review
기안·결재 Draft·Approval		→ 등록증에 변경내용 기록 Fill in change
→ 발급 Issue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수소 업무 담당부서) Institution: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Department relevant to Hydrogen business)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 호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증

1. 사업의 종류 및 대상 범위:
2. 상 호:
3. 사업소 소재지:
4. 대표자 성명:
5. 대표자 생년월일:
6. 수소용품의 종류 및 규격: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변경내용		
연월일	내 용	담당자(인)

제 호
(Certificate No.)

외국수소용품 제조 등록증명서 Certificate of Manufacture Registration of Foreign Hydrogen Appliances

1. 업 체 명:
(Company Name)
2. 사업소 소재지:
(Factory Address)
3. 대표자의 성명:
(Name of CEO)
4. 수소용품의 종류:
(Type of Hydrogen Appliances)
5. 수소용품의 규격:
(Standard of Hydrogen Appliances)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동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따라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또는 재등록을 마쳤으므로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granted for completing the manufacture registration under Article 38(1) • (2) of Economic Promotion and Safety Control of Hydrogen Act and Article 25(2) of the Enforcement Rule thereof.]

년 월 일
(Year) (Month) (Date)

유효기간:
(Valid Period)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Korea's Minister of Trade, Industry & Energy

직인
(Signature)

연월일 (Year, Month, Date)	변경 사항 (Changed Matters)	담당자(인) (Person in Charge)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증 재발급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	------	------	----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이용됩니다.

신 청 인	상 호	
	대 표 자 성명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청내용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재발급 사유(별첨 가능)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증의 재발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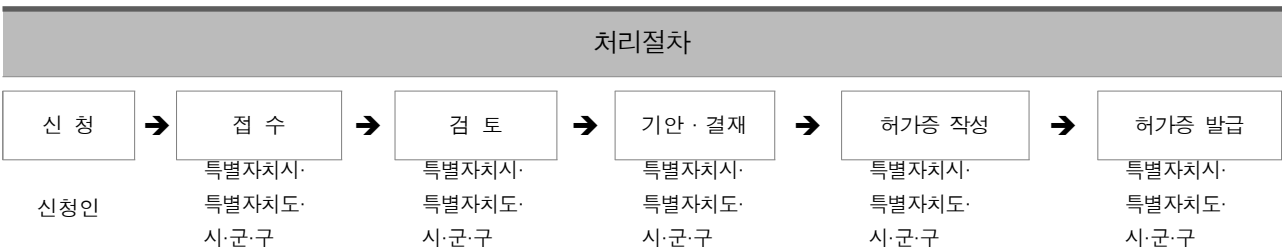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기존에 발급받은 허가증(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첨부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1만5천원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외국수소용품 제조 등록증명서 재발급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	------	------	----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이용됩니다.

신 청 인	상 호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청내용	등록번호 및 등록 연월일	
	재발급 사유(별첨 가능)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라 외국수소용품 제조 등록증명서의 재발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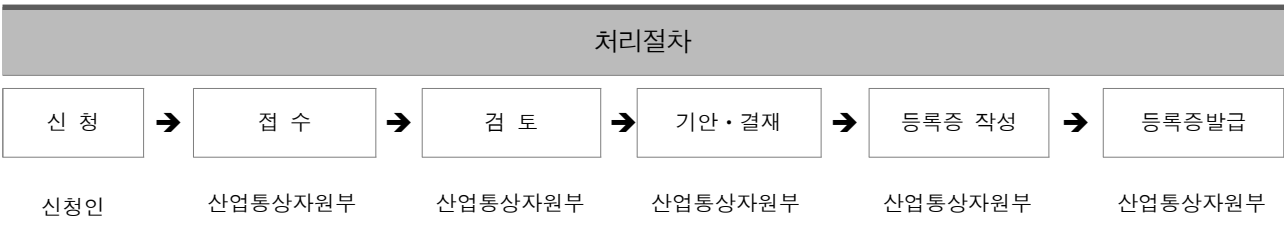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기존에 발급받은 등록증명서(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첨부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1만5천원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외국수소용품 공장심사 신청서

Application Form for Factory Audit - Foreign Hydrogen Appliances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The dark colored field is not applicable for an applicant.)

접수번호 Receipt No.	접수일 Receipt Date	처리기간 Process Term	30일 30 Days
---------------------	---------------------	----------------------	----------------

※ 전자우편주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이용됩니다.(Your E-mail is used for issuing E-Tax Bill..)

신청인 Applicant	상호 (Company Name)	
	대표자 (Name of CEO)	
	사무소 소재지 (Office Address)	전화번호 (Phone No.)
	전자우편주소 (E-Mail)	
	사업소 소재지 (Business Address)	

세부 내용 Information for regis- tration	심사희망 연월일 (Desired Audit Date)
	수소용품의 종류 (Type of Hydrogen Appliances)
	수소용품의 제조규격 (Manufacturing Standards and Classification)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7조제4항에 따라 공장심사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to undergo the factory audit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49(1)2 of the Economic Promotion and Safety Control of Hydrogen Act and the Article 27(4)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ame Act.

년 월 일
(Year) (Month) (Date)

신청인(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귀하
to: President & CEO Korea Gas Safety Corporation

첨부서류 Required Document	1. 시설설치 계획서(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부분만을 말합니다) 1부 [1 copy of facility installation plan (only the changed plan of the corresponding section in case of alteration)] 2.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부분만을 말합니다) 1부 [1 drawing and 1 manual on facility standards and technical standards (only the changed document of the corresponding section in case of alteration)] 3. 수소용품 제조공정도(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부분만을 말합니다) 1부 [1 process drawing for manufacturer (including foreigner) of gas appliances (only the changed document of the corresponding section in case of alteration)]	수수료 (Handling Fee)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른 수수료 According to the Article 55 of the Economic Promotion and Safety Control of Hydrogen Act
---------------------------	--	--

처 리 절 차 (Handling Process)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수소용품 제조사업 **[] 개시**
[] 중단 **신고서**
[] 폐지
[] 재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		
	대표자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소 소재지		
신청 세부 내용	허가사항	허가 종류	
		허가 번호	허가 연월일:
	개시·중단·폐지·재개 연월일		
	사 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사업을 []개시·
[]중단·[]폐지·[]재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일
신고인	상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 세부 내용	사업의 종류		
	허가 번호	허가 연월일	
	사업소 소재지		
	지위승계 내용	[] 상속 [] 양수 [] 합병 [] 그 밖의 것	
	지위승계 연월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수소
용품 제조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허가증 1부 2. 계약서 사본, 상속·경매·환가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증명하는 서류 등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 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만 제출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확인	→	결 재	→	통 보
--------	---	-----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수소 업무 담당부서)

행정처분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및 별표 6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날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 사유

나. 행정처분 절차 진행사실

적발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위반행위	진행 중인 내용

-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처분받은 날란에 "없음"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
- 2)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행정처분 내용을 수정하게 해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5항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주소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성명 주소	(서명 또는 인)			

안전관리규정심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

※ 사업자등록번호와 전자우편주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이용됩니다.

신청인	상호	
	대표자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세부 내용	사업소 소재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안전
관리규정을 심사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귀하

첨부서류	안전관리규정 3부	수수료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이 정한 수수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적합 여부 판정	→	기안 결재	→	발급
신청인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 선임
안전관리책임자 [] 해임 신고서
[] 퇴직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

※ 전자우편주소는 신고서 수리결과를 전자우편을 통해 공문으로 받아보려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신고인	상호	
	성명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소 소재지	

신고내용	구분	성명	자격	자격증 번호	선임(예정) 해임(퇴직) 연 월 일	취업 동의(인)
	선임					
	해임(퇴직)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임·[]퇴직 하였음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자격의 적정 여부 [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양성교육이수는 G-Topia(http://gtopia.kgs.or.kr,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지방자치단체 가스안전지원시스템) 를 통하여 확인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의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국가기술자격증 보유 여부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지방자치단체 가스안전지원시스템을 통한 양성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자격증 사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수소용품 제조시설 [] 완성검사 [] 수소연료 사용시설 [] 정기검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 리 기 간
		7일

※ 사업자등록번호와 전자우편주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이용됩니다.

신청인	상호	
	대표자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 세부내용은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세부 내용	사업소 소재지	
	허가번호	허가 연월일
	검사 희망 연월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제47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제46조제3항, 제47조제2항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시설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완성검사·정기검사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완공도면과 시공현황 1부 2.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설치계획이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는지에 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수수료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제2호·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수수료
------	---	--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검사	→	결 재	→	증명서 작성	→	발급
신청인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 호

[] 완성 [] 정기 검사증명서

1. 상 호:
2. 사업의 종류:
3. 사무소 소재지:
4. 대표자:
5. 사업소 소재지:
6. 검사원 성명:
7. 검사 연월일:
8. 차기 검사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같은 법 제47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제46조제6항·제47조제5항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시설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완성·정기 검사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 주소:

담당 부서:

전화번호: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직인

[illegible]

수소용품 검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

※ 사업자등록번호와 전자우편주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이용됩니다.

신청인	상호				
	대표자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세부 내용	사업소 소재지				
	수소 용품	품목허가번호	규격	수량	로트번호 또는 제품번호
	검사 희망 연월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수소용품의 검사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 제3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수수료
------	----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한국가스안전공사	→	현지 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	각인 또는 표시 한국가스안전공사
---------------	---	----------------	---	-------------------	---	----------------------

수소용품 검사 생략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상호	용품의 종류	
	대표자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소 소재지		

면제범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수소용품에 대한 검사 생략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귀하

첨부서류	검사가 생략되는 수소용품임을 소명하는 자료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처리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교육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		
	대표자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교육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대상자	안전관리자 구분	교육 구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교육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제 2항제4호에 따라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이 정한 금액
------	----	---

기술검토신청서

Application Form for Technical Review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The dark colored field is not applicable for an applicant) (앞쪽)

접수번호 Receipt No.	접수일 Receipt Date	처리기간 Process Term	7일(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의 경우 15일) 7 Days (15 Days for foreign hydrogen appliances)
---------------------	---------------------	----------------------	---

※ 사업자등록번호와 전자우편주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이용됩니다.(Your Business Registration No. and E-mail is used for issuing E-Tax Bill.)

신청인 Applicant	상호 (Company Name)		
	대표자 (Name of CEO)		생년월일 (Date of Birth)
	사무소 소재지 (Office Address)		전화번호 (Phone No.)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o.)		
	전자우편주소 (E-Mail)		
	사업소 소재지 (Business Address)		

※ 사업의 종류 및 대상범위는 뒤쪽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Refer to back. Fill in business type and scope including type of hydrogen appliances in case of manufacture registration of foreign hydrogen appliances.)

사업의 종류 및 대상 범위 Business Type and Scope	
---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제3호·제3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제2호·제2항제2호·제24조제1항제2호·제3항제2호·제46조제3항 제2호에 따라 기술검토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to undergo the technical review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36(2)3 and Article 38(1) of the Economic Promotion and Safety Control of Hydrogen Act and the Article 49(1)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and the Article 22(1)2·(2)2, Article 24(1)2·(3)2, and Article 46(3)2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ame Act.

년 월 일
(Year) (Month) (Date)

신청인(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귀하
to: President & CEO Korea Gas Safety Corporation

첨부서류 Required Document	1.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 기술검토신청서의 경우 (The technical review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22 and Article 24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Economic Promotion and Safety Control of Hydrogen Act) 가. 시설의 설치계획서(허가 또는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부분만을 말합니다) 1부 [1 copy of facility installation plan (only the changed plan of the corresponding section in case of alteration)] 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허가 또는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부분만을 말합니다) 1부 [1 drawing and 1 manual on facility standards and technical standards (only the changed document of the corresponding section in case of alteration)] 다. 수소용품 제조사업자나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자의 경우 수소용품제조공정도(허가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부분만을 말합니다) 1부 [1 process drawing for manufacturer (including foreigner) of hydrogen appliances (only the changed document of the corresponding section in case of alteration)] 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른 기술검토신청서의 경우 (The technical review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46(3) of the Economic Promotion and Safety Control of Hydrogen Act) 가. 시설설치계획서 1부 (1 copy of facility installation plan) 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부분만을 말합니다) 1부 (1 drawing and 1 manual on facility standards and technical standards)	수수료 (Handling Fee)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수수료 According to the Article 2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High 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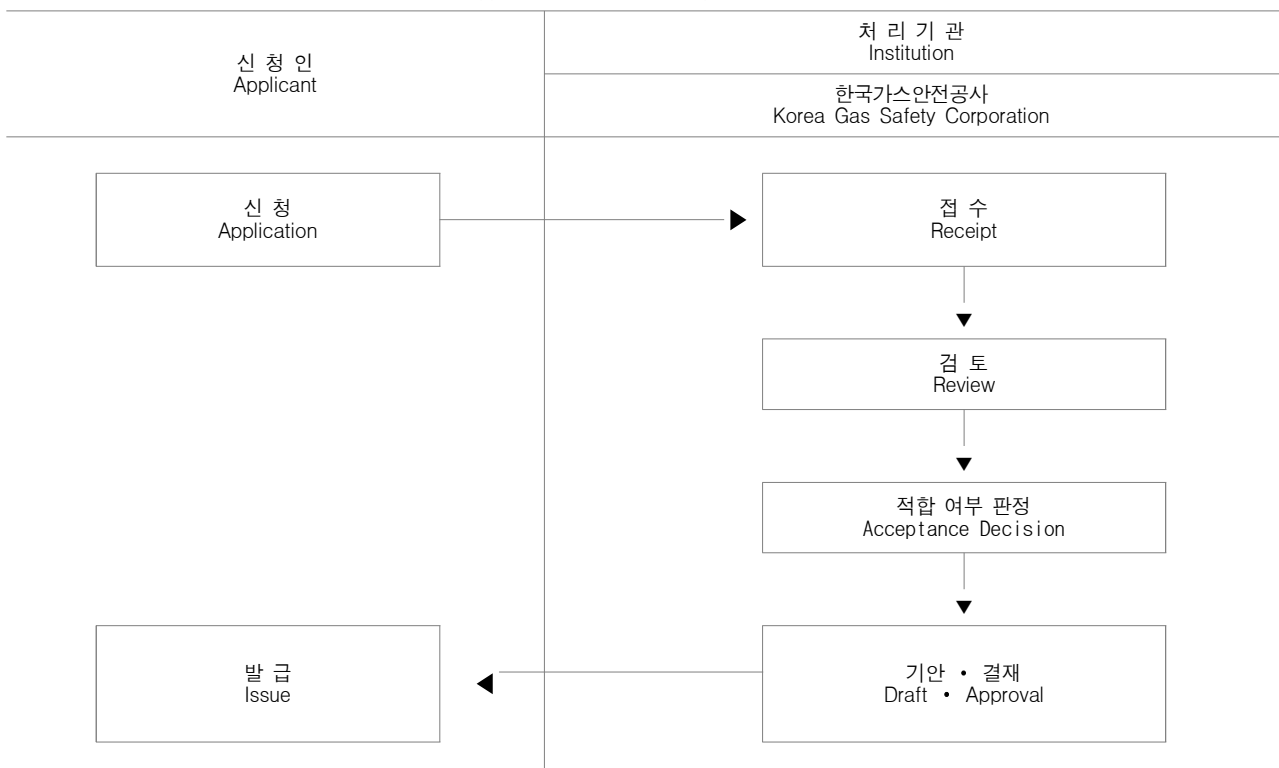
※ 앞쪽의 사업의 종류 및 대상 범위란에는 다음 중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작성하고, 수소용품 제조사업이나 외국수소용품 제조 등록의 경우는 수소용품의 종류를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Fill in the blanks of the business type and scope mentioned preceding page with the following relevant information, and in case of manufacture business of gas appliance or manufacture registration of foreign hydrogen appliance, including kinds of hydrogen appliance.

사업의 종류 및 대상 범위 (Business Type and Scope)	사업의 종류 (Business type)	대상 범위 (Scope)
	수소용품 제조사업 (Hydrogen appliance production business)	-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 (Foreign hydrogen appliance manufacture Registration)	-
	수소연료사용 (Hydrogen fuel use)	-

처리절차(Handling Process)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This application form will proceed as follows.)



판매가격 보고서

작성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사업자	상 호: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변경일:	
보고내용	종 류	단 위	판매가격
	수소(부생)	원/kg	
	수소(추출)	원/kg	
	수소(수전해)	원/kg	

유의사항

1.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을 참조하여 판매가격 보고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하나의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별로 보고합니다.